**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1. **(목적과 근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보다 법치화·국제화·편리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적용범위)**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3. **(비안(備案)기구)**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부성(副省)급 도시의 상무주관부서와 자유무역시험구·국가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기구이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전국 범위 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부성(副省)급 도시의 상무주관부서와 자유무역시험구·국가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는 해당 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이하 '비안(備案) 시스템'으로 약칭)을 통하여 비안(備案) 업무를 전개한다.

1. **(성실한 비안(備案))**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 방법에 따라 진실·정확·온전하게 비안(備案) 정보를 제출하고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미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와 관련된 증명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비안(備案) 절차**

1. **(기업 설립 비안(備案))**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이 방법에 규정된 비안(備案) 범위에 속하는 경우 기업명칭예비등기 허가를 획득한 후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전체 발기인, 이하 '전체 발기인'으로 약칭)이 공동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영업집조를 발급받기 전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안(備案)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신고표>(이하 '<설립 신고표>'로 약칭) 및 관련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설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기업 변경 비안(備案))** 이 방법에 규정된 비안(備案)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비안(備案)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표>(이하 '<변경 신고표>'로 약칭) 및 관련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등록주소지, 기업유형, 경영기한, 투자업종, 업무유형, 경영범위, 프로젝트 성격,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조직기구 구성, 법정대표인,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 실제지배인의 정보, 연락담당자, 연락방식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성명(명칭), 국적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지), 증서 유형 및 번호, 인수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자금 출처지, 투자자의 유형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5.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포함하여 지분(주식), 합작권익이 변경된 경우;
6. 합병, 분할, 종료된 경우;
7. 외자기업 재산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한 경우;
8. 중외합작기업의 외국합작자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회수한 경우;
9. 중외합작기업이 경영관리를 위탁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가 변경을 결의하였거나 결정한 시점을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으로 한다. 법률·법규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사항의 효력발생 조건에 관한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점을 변경사항 발생시점으로 한다.

1. **(온라인 문서 제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비안(備案)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
3.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투자자(또는 전체 발기인) 또는 그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전체 투자자(또는 전체 발기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표를 지정하였거나 대리인을 공동위임한 증명;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타인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권을 위임한 증명 (타인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6.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변경사항이 투자자 기본정보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7. 법정대표인의 자연인 신분증명 (변경사항이 법정대표인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8. **(실제투자 변화 비안(備案))**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영업집조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비안(備案) 정보를 제출한 상태에서 실제투자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30일 내에 비안(備案)기구에서 변화 상황에 대한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9. **(기 설립 기업의 변경 비안(備案))**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비준을 받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 방법에 규정된 비안(備案) 범위에 속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의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는 비안(備案) 수속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10. **(비안(備案)에서 심사비준으로의 전환)** 비안(備案)관리를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비안(備案) 처리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설립 신고표> 또는 <변경 신고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한 후 비안(備案)기구는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형식상의 검토를 실시하고 신고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방법에 규정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안(備案)을 완료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불온전·불정확하다거나 그의 경영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발견한 경우 15일 내에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보충 제출하여야 함을 1회에 한해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충 정보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비안(備案)기구의 비안(備案) 업무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15일 내에 관련 정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비안(備案)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온라인으로 고지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동일한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비안(備案)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이미 실시한 경우 7일 내에 별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비안(備案) 시스템을 통하여 비안(備案)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비안(備案) 시스템에서 비안(備案) 결과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비안(備案) 증명서의 수령)** 비안(備案) 완료 통보를 받은 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복사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복사본)을 소지하여 비안(備案)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이하 '<비안(備案) 증명서>'로 약칭)를 수령할 수 있다.
2. **(비안(備案) 증명서의 내용)** 비안(備案)기구가 발행하는 <비안(備案)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미 제출한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신고서류와 그 서류들이 형식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내용;
4. 비안(備案)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
6. 국가의 관련 세금감면 규정 및 세금감면 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3장 감독관리**

1. **(감독검사)**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을 이행한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정기추출검사, 제보에 근거한 검사, 관련부서 또는 사법기관의 건의와 반영 상황에 근거한 검사 및 직권에 근거한 검사 절차 개시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비안(備案)기구는 공안(公安), 국유자산, 세관, 세무, 공상(工商), 증권, 외환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본 부서의 관리직책에 속하지 아니하는 불법·범칙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추출검사의 방식)** 비안(備案)기구는 공평성·규범성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안(備案) 번호 등을 임의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검사 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출검사 결과는 비안(備案)기구가 상무부 외국인투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2. **(제보에 근거한 검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비안(備案)기구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서면 형식을 취하여야 하고 명확한 제보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제보를 받은 후 필요한 확인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관련 부서의 건의에 근거한 검사)**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사법기관은 그의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비안(備案)기구에 감독검사 건의를 제시할 수 있으며 비안(備案)기구는 관련 건의를 받은 후 지체없이 확인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직권에 근거한 검사 절차 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행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비안(備案)기구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직권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5. **(감독검사의 내용)** 비안(備案)기구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6.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 이행 여부;
7.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한 비안(備案) 정보의 진실·정확·온전 여부;
8.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열거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 전개 여부;
9.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열거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 전개 여부;
10. 국가안전심사 촉발 상황 존재 여부;
11. 비안(備案)기구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 이행 여부.
12. **(검사 협조)** 검사 시 비안(備案)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열하거나 검사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는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검사 기율)** 비안(備案)기구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 대상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 대상자가 제공하는 재물 또는 서비스를 받아들이거나 기타 불법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신용기록)** 비안(備案)기구와 기타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신용 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상무부 외국인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성실하게 비안(備案)하지 아니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해당 신용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상무부 외국인투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비안(備案)기구가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거나 공유하는 신용정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개인 사생활, 상업비밀 또는 국가비밀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신용정보의 정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상무부 외국인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기록이 불온전하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비안(備案)기구에 제출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정정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1. **(비안(備案) 의무 위반 시의 법률책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 내에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의무의 이행을 기피하는 경우,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하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경위가 엄중한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진입허가 위반 시의 법률책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열거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가 기한부 시정 및 관련 투자·경영 활동의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병과하되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투자금지 분야에 투자 시의 법률책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열거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가 관련 투자·경영 활동 중단, 지분 또는 기타 자산의 기한부 처분을 명하고 불법소득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병과하되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감독검사 협조 거부 시의 법률책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비안(備案)기구의 감독검사를 기피, 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방해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가 시정을 명하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공직자의 법률책임)** 비안(備案)기구의 담당인력이 비안(備案) 또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취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1. **(반독점 심사)** 외국인투자 사항이 반독점 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직권에 근거한 국가안전심사의 제기)**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안(備案)기구는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거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 범위에 속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수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투자성회사, 창업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 외국인투자의 투자성회사, 창업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4.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자의 비안(備案))**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투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5.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비안(備案))** 홍콩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상 홍콩을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상 마카오를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 그 회사의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은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내륙지역 투자 비안(備案) 관리방법(시범시행)>에 따라 처리한다.
6. **(해석 담당부서)** 이 방법은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7. **(시행일자)** 이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신고서류

2.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서류

3.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4.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